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075호

시행일자 2019. 8. 23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집행정지 안내)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2018-177호)

1. 관련근거 :

가.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177호, 2018.8.27.)
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089(2019.8.22.)

다.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(2019.8.16.)

2. 보건복지부에서 2018.8.27. 고시한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7호) [별표1]의 별지2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'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약사명	대상 품목	효력정지일
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9인	298품목 (붙임참조)	- (기존) 2018.11.30.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(2019.8.25.까지) - **(변경) 2019. 9. 27. 까지**

붙임: 집행정지 대상 품목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